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의 특례〉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9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의 특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3.
3. 회부연월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공공의 투자재원 역시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리츠(REITs),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음.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타당성 검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

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자 결정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의 특례

개정안은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 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투자회사 등 출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의 특례) ①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 ③ (생략)	<u>동산투자자문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요건과 추천 절차,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추천과-----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회사 등 출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¹⁾ 이는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적성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

및 사업수지 분석, 출자재원 조달 방법, 출자대상 법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출자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금융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이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검토 및 신속한 투자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²⁾등 3개의 기관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을 출자 타당성 수행기관에 포함할 경우 지방공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④ ~ ⑦ (생략)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8호

다만, 회계법인, 감정평가 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 민간기관은 금융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 및 수익구조에 대해 전문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방공사가 금융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익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 및 검토 내용 등이 지방공사의 자율에 맡겨져 검토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